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제조합에 운영위원회 외에 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임기 등 조정》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83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제221478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공제조합에 운영위원회 외에 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임기 등 조정(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3
나. 부칙	25

I.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제221478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준호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12. 2.

다. 회 부 일 : 2025. 12.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해 협동조직인 건설공제조합 설립과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심의·의결과 업무 집행 감독 모두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심의·의결과 감독이 분리되지 않아 업무의 합리성이 저감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

또한, 현행 운영위원회 위원 수가 30명 이내로 너무 많아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건설공제조합의 기존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 기능, 감독위원회는 독립적인 감독·감사 기능으로 서로 독립화하며,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위원 수를 각각 25명과 5명 이내로 조정하는 동시에 이전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2년 이내에는 위원으로 재선임되지 못하게 규정함으

로써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등).

3. 검토의견

가. 공제조합에 운영위원회 외에 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임기 등 조정(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개정안은 공제조합에 현행 운영위원회 외에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감독·감사 하는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감독위원회 신규 설치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임기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5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u>심의·의결</u> 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① ----- ----- <u>심의·의결</u> ----- -----.
② 운영위원회는 <u>30명</u>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	② ----- <u>25명</u> ----- ---- <u>구성</u> 하되, 공제조합 이사장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생략) <u><신설></u>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55조의3에 따른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u><신설></u>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생략) <u><신설></u>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5조의3(감독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55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업

현행	개정안
	무를 감독 및 감사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로부터 독립된 감독위원회를 둔다. ② 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3명 이하의 위원 2.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 이하의 위원 3. 공제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1명 이하의 위원 ③ 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감독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그 밖에 감독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54조¹⁾는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²⁾

현행법 제56조³⁾는 공제조합의 사업으로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계약보증·손해배상보증·하자보수보증·선급금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으로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있음.

【 공제조합 주요 현황 】

구 분	설립	조합원	출자금	보증규모	연매출	직원수
건설공제조합	1963	13,254개사	6.6조원	166.1조원	6,559억	390명
전문건설공제조합	1988	62,994개사	6.2조원	45.2조원	5,100억	430명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996	9,668개사	1.1조원	12.6조원	988억	84명
합 계		85,916개사	13.9조원	223.9조원	12,647억	904명

※자료: 국토교통부(2024년 말 기준)

3)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보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에 대한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5.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6. 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7. 건설 관련 법인에의 출연
8. 조합원이 공동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9. 조합원의 정보 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0.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한 법인 등에 대한 보증 및 융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의 출자 및 융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3.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증

③ 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상호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정보 교환 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보증·하도급보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55조의2⁴⁾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시행령 제51조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4)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5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1조(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출자좌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14명 이하의 위원
2.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삭제 <2021. 4. 6.>
5. 삭제 <2021. 4. 6.>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4명 이하의 위원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운영위원회는 ①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14명 이하의 위원,
②재정경제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 각 1명,
③국토교통부장관이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의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 전공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등 중에서 위촉하는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현행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총회 선출 위원 및 국토교통부장관 위촉 위원은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현행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
한 자

③ **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의
직접·무기명투표로 각각 선출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2항제6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집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또는 변경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밖
에 같은 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라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심의 사
항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⑨ **공제조합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차입금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으며(현행법 시행령 제51조제6항),

공제조합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현행법 시행령 제51조제9항).

개정안은 현행법 제5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①공제조합에 운영위원회(공제조합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와 감독위원회(운영위원회의 업무를 감독·감사)를 각각 두도록 하고(안 제55조의2제1항, 제55조의3 신설), ② 공제조합에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임기 등 규정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신설).

(1) 공제조합에 운영위원회 외에 감독위원회 설치

(안 제55조의2제1항, 제55조의3 신설)

운영위원회 외에 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2021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관련 공제조합 개편방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동 개편방향⁶⁾에서 국토교통부는 피보증자인 협회⁷⁾가 보증자인 공제

6) 국토교통부, “건설관련 공제조합 개편방향”, 2021.2.9. pp.4, 10.

Ⅲ. 공제조합 운영상 문제점

② 협회가 조합경영에 과도하게 개입

- 협회(피보증자)와 공제조합(보증자)은 이해관계 상충 우려
 - 협회 의사결정 구조는 1사1표이나 조합은 1좌1표(1사=1만좌=1만표)
 - 협회는 건설업체의 보증부담 완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선출직인 협회장은 소액 출자자의 보증·융자 민원 등에 취약 우려
 - 협회장과 시도회장이 운영위원회를 통해 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
 - 협회장이 관행적으로 운영위원장을 맡고, 협회장이 구성한 전형위원회에서 시도회장 등을 운영위원으로 선임(최장 12년 재임 사례)
 - 협회장은 운영위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공제조합과 이해 상충되는 의사결정을 하거나 협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요구
- * 건공은 산하 연구원 및 신문사에 연간 약 100억원, 전공은 약 40억원 지원

Ⅵ. 운영위원회 개편방안

◆ 협회의 과도한 공제조합 개입을 차단하고 투명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전체 조합원 이익에 부합되도록 조합이 운영되도록 개편

- ① 협회장·이사장 당연직 위원 제외
 - (현행) 협회장 및 이사장은 당연직 위원
 - (개선) 협회장 및 이사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되, '22.5.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협회장 및 이사장*의 당연직 유지

* 다만, 이사장은 운영위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 부여 등 제도개선 추진
- ②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 (현행) 운영위원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호선
 - (개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위원 중에서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시행일부부터 1개월내)하고, 1명은 정부위촉 전문가 위원으로 선임
 - 다만, 조합원이 위원장인 경우 조합과 이해관계 상충이 우려되는 안건 등에 대해서는 제척규정을 도입 ('21.4월 세부방안 확정)
- ③ 운영위원 잔여임기
 - 현 조합원 운영위원의 잔여임기는 60% 내외 보장 (위촉직은 미보장)
 - * '22년 종료위원은 '21.12월말, '23년 이후 종료위원은 '22.5월말 임기 종료
- ④ 운영위원 정수
 - (현행) 30명 이내에서 조합원 측(협회장 포함)은 14명(46.7%)
 - (개선) 20명 이내에서 조합원 측은 9명(45.0%)

조합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점, 운영위원회의 감독대상인 이사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인 점 등을 공제조합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그 개선책으로 협회장 및 이사장을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직접·무기명으로 선출하되 부위원장 1명은 정부 위촉 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원인 위원의 정수를 축소하는 등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⁸⁾에 반영한 바 있음.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편한 것에서 더 나아가 운영위원회 외에 별도의 감독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공제조합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서,

7)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의 품위 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 밖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608호, 2021.4.6. 일부개정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과 공제조합 이사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연임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중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는 현재 운영위원회로 일원화되어 있는 심의·의결과 업무집행 감독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업무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감독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와 유사하게 규정한 개정안의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⁹⁾

다만,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삭제하면서 감독위원회의 기능으로 ‘운영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감사’를 규정하고 있어, 기존에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던 감독 기능의 수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¹⁰⁾

9) 임기 규정 문구에 대한 검토는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관련 부분 참조(p.17)

10) 현재 각 공제조합의 정관은 공제조합의 감사로 하여금 조합의 재산·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부정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건설공제조합 정관」

제42조(감사) ① 조합에 감사 2인을 두되, 감사 1인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상임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 상임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연임의 경우 임기는 1년 단위로 하되,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보궐선임된 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④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선임된 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부정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공제조합정관」

제43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전무이사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되, 감사 1인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 및 상임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비상임감사는 대의원이어야 하며, 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임될 수 있다.

제44조(임원의 직무)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부정사실이 있음을

【 개정안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감독위원회 관련 주요사항 】

구분	운영위원회	감독위원회
기능	-공제조합의 <u>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u> ※ <u>현행법에서 '업무집행 감독' 삭제</u>	- <u>운영위원회의 업무를 감독 및 감사</u>
위원 구성	- <u>25명 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 (다음 주제에서 현행법령과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u>5명 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 1. <u>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3명 이하</u> 의 위원 2. <u>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 이하</u> 의 위원 3. <u>공제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1명 이하</u> 의 위원
위원의 임기		- <u>2년</u> 으로 하며, <u>한 차례만 연임</u> 가능 -임기 종료 후 <u>2년 이내</u> 에는 <u>다시 위원이 될 수 없음</u> .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공제조합의 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및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 발생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정관」

제39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이사 3인이내와 감사 2인을 두되, 감사 1인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이사장과 상임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비상임감사는 조합원이어야 하며, 총회에서 선임한다.

⑤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임기는 1년으로 하며 그 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

제40조(임원의 직무)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부정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운영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에 동의하며, 감독위원회 위원회 연임 제한 관련 규정은 유사 입법례¹¹⁾를 고려하여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건설공제조합은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로 이원화되는 경우 신속하고 통일된 경영활동에 우려가 있는 점, 국토교통부, 총회, 상임·비상임 감사 등의 감독·감사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여 감독위원회 설치 시 감독·감사 업무가 중복되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150명의 대의원¹²⁾이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감독·감사하는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옥상옥의 과도한 규제 조항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사결정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이유

11) 「새마을금고법」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③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

12)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대의원은 정원 200명, 현원 189명(2025.12.23. 기준)이며, 이 중 신흥균 외 149명의 대의원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공제조합별 대의원 정원 및 현원】

구 분	정 원	현 원
건설공제조합	200	174
전문건설공제조합	200	189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30	118

※자료: 국토교통부(2025.12.23. 기준)

등으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의원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2)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 등 규정 조정

(안 제5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신설)

개정안 제55조의2제2항, 제4항 및 제5항¹³⁾은 개정안 제55조의2제1항 및 제55조의3에서 공제조합에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임기 등 규정을 조정하려는 것임.

먼저, 개정안 제55조의2제2항¹⁴⁾은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3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축소하고 있음. 이는 개정안이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 운영위원회 위원 수가 많아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는 점과 개정안이 신설하는 감독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내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규모로 판단됨.

13) 개정안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제조합 이사장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55조의3에 따른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위원이 될 수 없다.

14) 개정안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제조합 이사장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음, 개정안 제55조의2제2항 및 제4항 단서¹⁵⁾는 공제조합 이사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있음.

2021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개편 당시, 공제조합 이사장은 집행을 맡고 있어 운영위원회의 감독 대상이므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¹⁶⁾¹⁷⁾

15) 개정안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제조합 이사장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55조의3에 따른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58년만의 혁신, 건설관련 공제조합 전면개편 추진”, 2021.2.9. pp.5.-6.

(4) 운영위원회 개편방안

□ 공제조합의 투명·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편한다.

○ 건산법령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이나,

- 일부 공제조합은 협회장 및 시도회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제조합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면서 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이에, 조합원 운영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을 도입을 의무화 한다.

○ 이 경우 조합원이기도 한 협회장만 당연직 운영위원을 유지 시 다수·소수출자자, 비회원사*, 지역대표 등과 형평성 논란을 고려, 협회장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한다.

* 조합원 중 회원사 비율: 건설공제 71.2%, 전문공제 64.2%, 기계공제 71.3%

○ 이와 함께, 집행을 맡고 있는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감독대상인 만큼,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이사장도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한다.

* 다만, 이사장은 운영위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 부여 등 제도개선 추진

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608호, 2021.4.6. 일부개정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과 공제조합 이사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연임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중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삭제함에 따라, 이사장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공제조합의 사업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데 대한 문제의 소지가 없어진바,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음, 개정안 제55조의2제4항 본문 및 제5항¹⁸⁾은 운영위원회 위원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79호, 2016.2.11,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08호, 2021.4.6, 일부개정)
제51조(운영위원회)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u>선임하는 7명 이상 13명 이하</u> 의 위원 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u>당해공제조합에 회원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u> 5. <u>당해공제조합의 이사장</u>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u>8명 이상 13명 이하</u> 의 위원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제51조(운영위원회)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u>출자좌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9명</u> 의 위원 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삭 제> 5. <삭 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u>9명 이하</u> 의 위원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18) 개정안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55조의3에 따른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위원이 될 수 없다.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 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제55조의2제4항 본문은 현행법 시행령 제51조제3항¹⁹⁾에 따른 임기 및 1회 연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독위원회의 위원 연임 승인 절차’를 추가한 것으로,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부적절한 인사의 위원 연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 제55조의2제5항은 임기 종료 후 선임 제한 기간을 위원의 임기와 동일한 기간(2년)으로 명시함으로써, 보궐선거 등을 통해 2년 이내에 다시 위원으로 선임되어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1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1조(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출자좌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14명 이하의 위원
2.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삭제 <2021. 4. 6.>
5. 삭제 <2021. 4. 6.>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4명 이하의 위원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임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고려할 때 비슷한 취지의 유사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임.²⁰⁾²¹⁾

【 개정안에 따른 운영위원회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구분	현행	개정안
위원 구성	-<u>30명 이내</u> 위원으로 구성 ※시행령 제51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함. 1.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u>선출</u>하는 <u>14명 이하</u>의 위원 2. 재정경제부장관 지명 공무원 <u>1명</u> 3. 국토교통부장관 지명 공무원 <u>1명</u> 4. 삭제 <2021. 4. 6.> 5. 삭제 <2021. 4. 6.>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u>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u>하는 <u>14명 이하</u>의 위원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	-<u>25명 이내</u> 위원으로 구성

20) 「새마을금고법」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③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

21)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도 함께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구분	현행	개정안
	서 임원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시행령 제51조제9항 -공제조합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 제출 가능	-공제조합 이사장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
위원의 임기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14명 이하의 위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4명 이하의 위원의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당연직 위원 아닌 위원은 임기 종료 후 2년 이내에는 다시 위원이 될 수 없음.

한편, 개정안 제55조의2제4항 및 제5항²²⁾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등을 당연직 위원과 당연직이 아닌 위원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22) 개정안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55조의3에 따른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위원이 될 수 없다.

현행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²³⁾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위원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동 지명직 위원을 임기 및 연임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운영위원회의 감독 기능 삭제에 따라 위원의 정원 축소가 필요하고, 연임 제한은 동일 인사가 장기간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합 운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개정안에 동의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관련 규정은 유사 입법례(「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3항)를 고려하여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1조(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출자좌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14명 이하의 위원

2.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삭제 <2021. 4. 6.>

5. 삭제 <2021. 4. 6.>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4명 이하의 위원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건설공제조합은 16개 시·도회가 권역별로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는바²⁴⁾ 운영위원회의 선출직 조합원 위원을 현행 14인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점,²⁵⁾²⁶⁾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24) 「건설공제조합 정관」

제29조의2(대의원) ① 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직대의원과 당연직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수는 100인 이상 200인 이내로 한다.

② 선출직대의원은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지점(“출장소”를 포함한다. 본조에서 이하 같다)별로 선출하되, 100분의 50은 자기출자좌수 다수출자순에 의하여 선출(이하 “일반대의원”이라 한다.)하고, 100분의 50은 추천 등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출(이하 “추천대의원”이라 한다.)한다.

③ 당연직대의원은 제30조제1항제1호의 운영위원회 위원, 제42조제1항의 비상임 감사, 대한 건설협회의 회장 및 시·도회장으로 한다.

④ 선출직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나, 추천대의원의 연임은 1회로 제한한다. 다만, 임기중 불참사유서 제출없이 3회 이상 총회에 불참한 경우 연임될 수 없고, 보궐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대의원은 자기출자좌수의 의결권과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한다.

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4호, 2023.8.8. 일부개정 및 시행) 제51조제2항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위원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각각 종전의 9명 이하에서 14명 이하로 확대한 바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4호, 2023.8.8. 일부개정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가 설립하는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조합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위원을 9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9명에서 14명으로 늘리려는 것임.

26) 2000년 이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시행령 규정 개정 연혁(요약)

구 분	2002년 개정	2003년 개정	2008년 개정	2011년 개정	2016년 개정	2021년 개정	2023년 개정
조합원인 위원 (총회에서 선임 또는 선출)	7명	7명 내지 9명	7명 내지 9명	7명 이상 10명 이하	7명 이상 13명 이하	9명 이하	14명 이하
재정경제부장관 지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국토교통부장관 지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당해조합에 회원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	○	○	○	○	○	-	-
당해조합의 이사장	○	○	○	○	○	-	-
국토교통부장관 위촉	6명	6명 내지 8명	8명 이상 10명 이하	8명 이상 11명 이하	8명 이상 13명 이하	9명 이하	14명 이하

※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1조 연혁법령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150명의 대의원²⁷⁾이 총회에서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위원들의 연임 여부를 감독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으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의원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27)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대의원은 정원 200명, 현원 189명(2025.12.23. 기준)이며, 이 중 신흥균 외 149명의 대의원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공제조합별 대의원 정원 및 현원】

구 분	정 원	현 원
건설공제조합	200	174
전문건설공제조합	200	189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30	118

※자료: 국토교통부(2025.12.23. 기준)

나. 부칙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지명·위촉된 위원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지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고 있고, 부칙 제2조는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지명·위촉된 위원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지명·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일(개정안 부칙 제1조)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 및 감독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²⁸⁾²⁹⁾ 하위 법령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28)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개정안

제55조의3(감독위원회) ⑤ 그 밖에 감독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개정안 부칙 제2조)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수가 30명 이내³⁰⁾에서 25명 이내로 감소하게 되는 점, 공제조합 이사장이 새롭게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91

30)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 수는 건설공제조합 30명, 전문건설공제조합 30명,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20명임.

【 공제조합별 운영위원회 위원 수 및 임기 현황 】

구분	운영위원회 위원 구분		임기	비고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12명	~‘26.02.22.	▲ 운영위원 후보 미달로 추가선거 개최 → 추가선출자는 임기 불일치 ▲ 1명 결원 상태
		1명	~‘27.01.20.	
	전문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	5명	~‘26.03.04.	▲ 운영위원 정수 확대(‘23년)에 따라 5명을 추가위촉하여 임기 불일치
		9명	~‘27.05.29.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명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	14명	~‘27.09.07.	-
	전문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	9명	~‘27.05.29.	▲ 운영위원 정수 확대(‘23년)에 따라 5명을 추가위촉하여 임기 불일치
		5명	~‘27.09.11.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명		▲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조합원	9명	~‘26.05.31.	-
	전문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	9명	~‘27.06.09.	-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명		

※자료: 국토교통부